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07

발의연월일: 2022. 5. 13.

발 의 자: 오기형 · 김민철 · 김진표

송재호 • 이용선 • 이용우

임호선 · 정태호 · 홍성국

홍정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는 발생된 손해의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. 그런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유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한도는 발생된 손해의 5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, 개인정보의 보호를신용정보보다 더 완화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음. 따라서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발생된 손해의 5배 이내로 확대하여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이 법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그 특성상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,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·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. 이에 이 법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을 도모하는 동시에, 비밀유지명령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하고자 함.

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,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함(안 제39조제3항).
- 나.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만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원 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9조의3).
- 다.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 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9조의

- 4, 제39조의5).
- 라.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관하여 「민사소송법」상 비밀보호를 위한 소송기록 열람의 제한이 있는 경우,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소송기록 열람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하여금 비밀유지명령 신청인에 대하여 소송기록 열람 신청 사실을 통지하게 하고 소송기록 열람 신청인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게함(안 제39조의6).
- 마.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75조제3항제1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2호 중 "제39조의3제2항제2호·제3호"를 "제39조의7제2항 제2호·제3호"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제39조의3제1항"을 "제39조의7제1항"으로 한다.

제28조의7 중 "제39조의3, 제39조의4,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"를 "제39조의7, 제39조의8, 제39조의10부터 제39조의12까지"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"제39조의7"을 "제39조의11"로 한다.

제39조제3항 본문 중 "3배"를 "5배"로 한다.

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를 각각 제39조의7부터 제39조의19까지로 하고, 제5장에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3(자료의 제출)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

- 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(當否)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 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.
-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제39조의4(비밀유지명령)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

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,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
- 2.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"비밀유지명령"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
- 2.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
- 3.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
-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

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-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제39조의5(비밀유지명령의 취소)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(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)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-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 -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.
 -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제39조의6(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)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 진 소송(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)에 관한 소송 기록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에,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

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이 조에서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는 같은 항의신청을 한 당사자(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3항에서 같다)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-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(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)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아니한다.

제39조의12(종전의 제39조의8)제1항 본문 중 "제39조의3"을 "제39조의 7"로 한다.

제39조의15(종전의 제39조의11)제1항제2호 중 "제39조의4"를 "제39조의8"로 한다.

제39조의17(종전의 제39조의13) 본문 중 "제39조의12"를 "제39조의16" 으로 한다. 제39조의19(종전의 제39조의15)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"제39조의14"를 각각 "제39조의18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제39조의3제1항"을 "제39조의7제1항"으로, "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18"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"제39조의12제2항"을 "제39조의16제2항"으로 한다.

제71조제2호 및 제4호의4 중 "제39조의14"를 각각 "제39조의18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의5 중 "제39조의3제1항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7제1항(제39조의18"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의6 중 "제39조의3제4항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7제4항(제39조의18"로 한다.

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
- ② 제1항제4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75조제2항제4호 중 "제39조의6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10(제39조의18"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의2 중 "제39조의3제3항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7제3항(제39조의18"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의3 중 "제39조의4제1항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8제1항(제39조의18"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의4 중 "제39조의4제3항"을 "제39조의8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의5 중 "제39조의4제3항"을 "제39조의8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의5 중 "제39조의7제2항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11제2항(제39조의11제2항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11제2항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11제2항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11제2항(제39조의

조의18"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의6 중 "제39조의7제3항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11제3항(제39조의18"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의7 중 "제3 9조의8제1항 본문(제39조의14"를 "제39조의12제1항 본문(제39조의18"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의8 중 "제39조의12제4항"을 "제39조의16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3 9조의11제1항"을 "제39조의15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제3 9조의11제1항"을 "제39조의16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제3 9조의12제2항"을 "제39조의16제2항"으로, "제39조의12제3항"을 "제39조의16제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개인	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
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	
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	
에게 제공(공유를 포함한다. 이	
하 같다)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5조제1항제2호·제3호·제5	2
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·	<u>제39조의7제2항제2호·</u>
<u>제3호</u> 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	<u>제3호</u>
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	
보를 제공하는 경우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	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
제공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	제공 제한) ①
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	
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	- <u>제39조의7제1항</u>
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	
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	
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	
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8조의7(적용범위) 가명정보는	제28조의7(적용범위)

제20조, 제21조, 제27조, 제34조 제1항,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, 제39조의3, 제39조의4, 제39조 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
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, 제36조에 따른 정정·삭제,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,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등의 요구(이하 "열람등요구"라한다)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·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 략)

- 제39조(손해배상책임) ①·② (생략)
 -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

<u>제39조의7, 제39조의8, 제39</u> <u>조의10부터 제39조의12까지</u>
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
①
제39조의11
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손해배상책임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
<u>Б</u> н <u> </u>
<u>.</u>

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(생 략) <신 설>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9조의3(자료의 제출)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 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(當否) 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 시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 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

이유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 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 여야 한다.

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39조의4(비밀유지명령) ① 법원 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

<신 설>

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 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 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 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 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 야 할 준비서면, 이미 조사하 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

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

- 2.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"비밀유지명령"이라 한다.
- 1.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
- 2.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
- 3.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
-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

<신 설>

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-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 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 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제39조의5(비밀유지명령의 취소)
 -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(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법원을 말한다)에 비밀유지명령을 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-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.
 -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

<신 설>

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 생한다.

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 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 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. 제39조의6(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) ① 비밀유지명 령이 내려진 소송(모든 비밀유 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 한다)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 여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제1 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, 당 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 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 는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 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이 조에서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

당사자(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3항 에서 같다)에게 그 청구 직후 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 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 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(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<u>기간 내에 이루어진</u>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 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 다)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 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「민사소송 법」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제39조의3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제39조의7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) (현행 제 39조의3과 같음)

동의 등에 대한 특례) (생 략)

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 지·신고에 대한 특례) (생 략)

에 대한 특례) (생략)

제39조의6(개인정보의 파기에 대 제39조의10(개인정보의 파기에 한 특례) (생 략)

대한 특례) (생 략)

제39조의8(개인정보 이용내역의 | 저 통지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 23조,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(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 다)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(생략)

제39조의9(손해배상의 보장) (생 제39조의13(손해배상의 보장) (현

<u>제39조의8</u> (개	인정5	리 유출	출등의	통
지·신고에	대한	특례)	(현행	제
39조의4와	같음)			

제39조의5(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39조의9(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에 대한 특례) (현행 제39조의5 와 같음)

> 대한 특례) (현행 제39조의6과 같음)

제39조의7(이용자의 권리 등에 제39조의11(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) (현행 제39조의7과 같음)

<u>세39조의12</u> (개인정보	이용내역의
통지) ①	
<u>제39조의7</u>	
(a) (b) -1 -1 (b)	

(2) (현행과 같음)

략)

제39조의10(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·차단) (생 략)

제39조의11(국내대리인의 지정)
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, 매출액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(이하 "국내대리인"이라 한다)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·신고
- 3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<u>제39조의12</u>(국외 이전 개인정보 의 보호) (생 략)

제39조의13(상호주의) 제39조의12 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 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 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 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. 다만,

행 제39조의9와 같음)
제39조의14(노출된 개인정보의
삭제·차단) (현행 제39조의10과
같음)
<u>제39조의15</u> (국내대리인의 지정)
①
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39조의8</u>
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제39조의16</u> (국외 이전 개인정보
의 보호) (현행 제39조의12와
같음)
<u>제39조의17</u> (상호주의) <u>제39조의16</u>

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<u>제39조의14</u>(방송사업자등에 대한 <u>2</u> 특례) (생 략)

제39조의15(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)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다.

- 1. 제17조제1항·제2항, 제18조 제1항·제2항 및 제19조(<u>제39</u> <u>조의14</u>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·제공한 경우
- 2. 제22조제6항(<u>제39조의14</u>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을 위반하여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

 제39조의18(방송사업자등에 대한
<u>세39소의10</u> (청중사업사중에 대한 특례) (현행 제39조의14와 같
음)
<u>제39조의19</u> (과징금의 부과 등에
대한 특례) ①
1
제39
조의18
2 <u>제39조의18</u>

-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경우
- 3. 제23조제1항제1호(<u>제39조의1</u> 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이용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
- 4. 제26조제4항(<u>제39조의14</u>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에 따른 관리·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 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
- 5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· 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 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 치(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한다)를 하지 아니한 경우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
- 6. 제39조의3제1항(제39조의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

3	<u>제39조의1</u>
8	
4	제39조의18
5	
	300 7 Al40
	제39조의18
6. <u>제39</u> 조의7제1	<u>항</u> -제39조의18-

7. <u>제39</u>	조의12기	제2항 -	본문(김	<u></u> 은
조	15항에	따라	군용도	는
경우를	를 포함	한다)을	· 위변	한하
여이	용자의	동의를	받지	아
니하고	1 이용	자의 개	인정보	L를
국외여	에 제공학	한 경우		

② ~ ⑧ (생 략)

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(생 략)
- 2. 제18조제1항·제2항(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9조, 제26조제 5항, 제27조제3항 또는 제28 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 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- 3. ~ 4의3. (생 략)
- 4의4. 제36조제2항(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

7. <u>제39소의16제2항</u>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71조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2제39조의
<u>18</u>
0 4시0 (취의한 한수)
3. ~ 4의3. (현행과 같음)
4의4

은 자와 <u>제39조의14</u> 에 따라	
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	
을 위반하여 정정·삭제 등	
필요한 조치(제38조제2항에	
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	
요한 조치를 포함한다)를 하	
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	
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	
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	
드	
4의5. <u>제39조의3제1항(제39조의</u>	4의5. <u>제39조의7제1항(제39조의</u>
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	<u>18</u>
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	
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	
개인정보를 수집한 자	
4의6. 제39조의3제4항(제39조의	4의6. <u>제39조의7제4항(제39조의</u>
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	<u>18</u>
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법정	
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	
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	
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	
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	
정보를 수집한 자	
5. • 6. (생 략)	5. • 6. (현행과 같음)
제7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73조(벌칙) ①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	

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제75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제21조제1항·제39조의6(제39 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4의2. ~ 12. (생 략)

- 12의2. <u>제39조의3제3항(제39조</u> <u>의14</u>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서 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
- 12의3. <u>제39조의4제1항(제39조</u> <u>의14</u>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
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
지명령을 위반한 자
② 제1항제4호의 죄는 비밀유
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
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제7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2
,
1. ~ 3. (현행과 같음)
4제39조의10(제3
9조의18
4의2. ~ 12. (현행과 같음)
12의2. <u>제39조의7제3항(제39조</u>
<u>의18</u>
10시0 - 레이크 시아레1 / 레이크
12의3. 제39조의8제1항(제39조
<u>의18</u>

용자·보호위원회 및 전문기 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 는 신고한 자 12의4.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 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한 자 12의5. 제39조의7제2항(제39조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의 동의 철회·열람·정 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6. 제39조의7제3항(제39조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 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 함한다)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 12의7. 제39조의8제1항 본문(제 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

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

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

12의4. 제39조의8제3항
12° 4. /40022° 0/40 6
12의5. 제39조의11제2항(제39조
<u>의18</u>
12의6. 제39조의11제3항(제39조
<u> 의18</u>
12의7. 제39조의12제1항 본문
(제39조의18

통지하지 아니한 자	
12의8. <u>제39조의12제4항</u> (같은	12의8. <u>제39조의16제4항</u>
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	
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	
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	
자	
13. (생 략)	13.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③
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	<u><삭 제></u>
보험 또는 공제 가입, 준비금	
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	
<u>아니한 자</u>	
2. <u>제39조의11제1항</u> 을 위반하여	2. <u>제39조의15제1항</u>
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	
한 자	
3. <u>제39조의12제2항</u> 단서를 위	3. <u>제39조의16제2항</u>
반하여 <u>제39조의12제3항</u> 각	<u>제39조의16제3항</u>
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	
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	
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	
국외에 처리위탁·보관한 자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